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8년 8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 23.(목)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8. 23. (목)	담당부서	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정병락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이창남 사무관(044-203-5888) 김애선 주무관(044-203-5887)

무역위원회, 반도체 테스트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

- '18.8.23에 제380차 무역위원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3일(목) 제380차 회의를 무역센터(서울)에서 개최하여,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.

□ 이번 조사 건은 국내 업체 ㈜아이에스시가 지난 '17년 11월 9일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해 '17년 11월 27일에 개시한 것으로, 약 9개월간 진행했다.

○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양 당사자로부터 총 26차례의 답변서와 의견서를 접수하했으며, 2회의 현지 조사,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 및 감정, 기술설명회 등의 절차를 수행했다.

□ 본 조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내업체 A사가 수출하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(조사대상물품)이 ㈜아이에스시 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.

○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제조된 반도체의 전기적 성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으로, 반도체 칩과 고가의 검사 장비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전부 및 도전부를 형성하는 도전성 입자가 주요 구성이다.

○ 양 당사자는 조사대상물품의 도전성 입자의 형상 및 도전성 입자들이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㈜아이에스시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립했다.

□ 무역위원회는 A사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㈜아이에스시가 보유한 특허와 비교하여 도전성 입자가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상이하다고 판단하여,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.

○ 이에 따라 A사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제조 및 수출 행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'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·상표·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'불공정무역행위'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'며 '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.'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이창남 사무관(☎044-203-5888) 또는 김애선 주무관(☎044-203-5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**

□ **조사신청 개요**(신청일: '17.11.9./조사개시결정일: 11.27.)

○ **(신청인)** ㈜아이에스시

○ **(피신청인)** 국내업체 A사

○ **(조사대상물품)** 반도체 테스트 소켓

(HS 코드 : 8536.69.1000, 8536.69.2010)

○ **(신청이유) 신청인**의 **특허권**(특허 제1019721호)에 대한 **침해 혐의**가 있는 **조사대상물품**을 **피신청인**이 **수출** 및 수출 목적으로 **국내 제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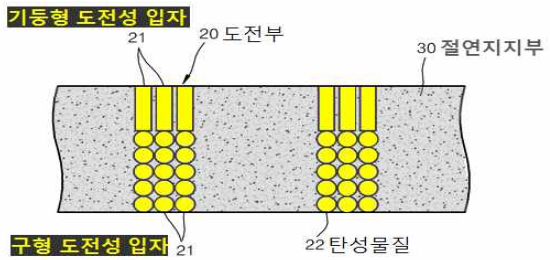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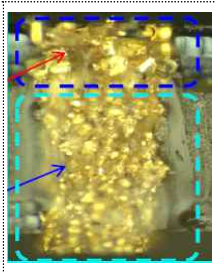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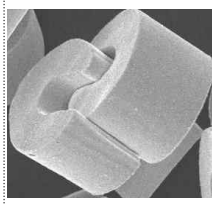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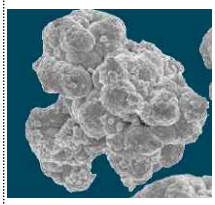
□ **진행경과 및 주요쟁점**

○ **(경과)** 조사신청서 포함 **26차례 서면 접수**, 당사자 회의, **현장 조사** 2회, 전문기관에 **분석·감정 의뢰** 및 **기술설명회** 등 진행

○ **(쟁점) 조사대상물품**의 **도전성 입자**가 **도전부**에 **상하방향 배향**되어 있는지 및 특허발명의 **기둥형·구형 도전성 입자**에 **해당**하는지 여부

-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**도전성 입자**는 **상하방향 배향**이 **아니고, 형상이 다른 도전성 입자**를 사용하므로 **특허발명**과 **상이**함 주장

< 특허발명과 조사대상물품의 주요 구성 비교도 >

특허발명	조사대상물품		
	도전부	도전성 입자 ①	도전성 입자 ②
			

□ **조사결과**

○ **(결과)** 조사대상물품은 **도전성 입자**가 **도전부**에 **배치된 형태**가 **특허발명**과 **상이**하므로 신청인의 **특허권**을 **침해**한 것이 **아니며,**

- **피신청인**이 조사대상물품을 **수출** 및 수출 목적으로 **국내**에서 **제조**한 행위는 **불공정무역행위**에 **해당**하지 **않음**